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34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수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을 9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전세버스 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99호, 2026. 7. 7., 공포 및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전세버스의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3824, 3825(팩스 044-201-5582)

4. 기타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